

III 캠퍼스 안심 소식지 III

성범죄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2022년 10월

디지털 성범죄



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·유포협박·소지·시청 등
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

SNS·오픈채팅방·만남어플 등 온라인상에서 친밀해진
상태에서 신상정보, 신체 사진 등을 요구, 이후 태도를
바꾸어 신상정보·사진 유포 및 게시 등 협박하여 추가로 범행

불법촬영물
제작·배포

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
제작·소지·유포

불법촬영물
소지·시청

동의없이 사진·동영상
촬영하거나 유포

성폭력처벌법이나
청소년보호법으로
처벌

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이거나
불법촬영이 의심될 때, 유포 협박을 받을 때
즉시 **112 신고**하세요!

마약류 등 약물이용 성범죄



특징 약물의 반감기*가 짧아 비교적 단시간 내에 몸에서 빠져나가며 무색·
무취로 음료에 타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,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
* 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

종류 ▶ **의료용 마약류**: 졸피뎀 등 진정수면제, 케타민 등 전신마취제, 항우울제
▶ **불법 마약류**: GHB(물뽕)· 메스암페타민(필로폰) 등

**초기
증상** ▶ **GHB**: 주변 사람과 정상적으로 대화하거나 질문에 또렷이
대답하다가 잠이 들며 깨어난 이후 전혀 기억하지 못함 /
자유의지를 상실한 채 주변 사람들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따르는
중독적인 모습이 나타남
- GHB는 술과 함께 복용 시 빠른 시간내(30분~1시간30분) 배출되므로
즉시 신고 후 해바라기센터에서 혈액·소변 등 채취 필요
▶ **졸피뎀 등 수면제류**: 술을 마실 때와 느낌이 다르며, 정신이
멀쩡하다가 특정 구간(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등)이 지난 후
기억이 없음

**대처
방법** ▶ 술을 마시는 중 주변 사람 혹은 본인의 마약섭취가 의심된다면
즉시 **112신고**
▶ 마시던 음료 등 증거를 보존, 소변을 보거나 몸을 씻지 않고
경찰을 통해 혈액·소변 등 채취

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. 대가를 지불하고 매매 및 소지 10년 이하의 징역

성범죄 사례



약물 이용
성범죄



수면제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
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, 강간치상죄·강제추행치상죄
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음

⇒ 강간 등 상해·치상: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
⇒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: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
이하 벌금

불법촬영물
등 소지



불법촬영물,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등임을 알면서도 채팅방
대화창에 머무르면서 파일들을 내려받지 않고 단순 시청한
행위도 "소지 행위"로 보아 처벌될 수 있음

⇒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: 1년 이상 징역
⇒ 불법촬영물소지: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

심신상실
준강간



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
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라면
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준강간

⇒ 준강간: 3년 이상 징역

도움을 요청해요



성범죄 상담 챗봇



피해 신고

▶ ☎112 전화신고 혹은 경찰서
방문하여 피해 사실에 대해
신고·고소할 수 있습니다.
▶ 사이버 성폭력(불법촬영물·
아동청소년성착취물·불법성영상물·
허위영상을 유포)은 사이버범죄 신고
시스템(ECRM, ecrm.police.go.kr)을
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성범죄 피해 상담

▶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:
☎ 02-735-8994
www.women1366.kr/stopds
▶ 여성긴급전화1366 : ☎ 1366
▶ 한국성폭력상담소 :
☎ 02-338-5801
▶ 대학 내 인권센터



경찰청



교육부